

제 1 조 목적 및 정의

1. 이 약관은 (주)어니스트펀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및 기타 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귀하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에 관한 제반 기술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원에게 제공하는 여신업무는 “회사”와 제휴된 “여신회사”가 전담합니다.
2. 사이트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귀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채권자가 아닙니다. 귀하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은 “여신회사”가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형성된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사이트를 통해 “여신회사”와 새롭게 채권참가 계약을 맺고 원리금 이익에 참가하는 채권참가자에 해당하며, 귀하는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금을 공여하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3. 사이트를 통해 실행되는 모든 대출은 “여신회사”로부터 “여신회사”의 자체 자금에서 실행된 것이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해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를 완료하면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참가거래를 동 투자자에게 허용하는 것이며, 투자자는 “회사”에게 “여신회사”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리의 매입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4. 사이트에서 성사되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채권자는 “여신회사”가 되며, “회사”는 개별 거래에 대해 매개하며 귀하는 이러한 매개구조를 통한 자금공여 형식에 동의합니다. 귀하는 사이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 표현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이트를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여 대출을 성사시키는 금융 거래장소(Platform)라고 인식하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서비스 사용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 2 조 투자자 등록

1. 귀하는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투자자로서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경매되는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여신업체”에 의해 사전 대출 실행을 받은 복수의 대출채권의 묶음을 말하며 이하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에 대해 투자(채권참가 예약의 전자적 표시)하여 투자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수취권리의 부분 또는 전체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조항들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재량 내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재량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특정인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 3 조 투자

1. 투자자로 등록하면 귀하는 사이트에서 대출자들이 게시한 대출채권리스트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투자금액을 정함으로써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대출채권리스트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대출자가 해당 대출신청 시 동의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수반된 대출채권의 게시를 의미하며, 귀하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정보로서 대출신청의 내용을 함께 게시하는 것입니다.

2. 귀하는 투자 시에 귀하가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금액과 동일한 최소한의 자금을 사이트가 지정한 귀하의 전용계좌(이하 “예치금계좌”)에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투자가 유효하고 투자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귀하는 해당 금액을 예치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예치금계좌에 대하여 “회사”는 내부 계산상 “회사”의 자금과 분리하여 귀하의 소유로써 이를 관리합니다. 귀하는 사이트에서 투자 시에 귀하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은행계좌는 귀하의 예치금계좌에서 귀하에게로 귀하의 자유로운 의도에 따라 귀하의 자금이 전자적으로 이체될 경우에 활용됩니다.

4. 귀하는 귀하의 예치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 중에 투자가 진행중인 상태인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을 대해 또 다른 투자를 실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이러한 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회사”는 귀하의 자금을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로 이체합니다.

5. 귀하가 실행하는 투자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귀하의 투자가 완료되고 “여신회사”가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가 형성되면, 귀하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서 귀하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리에 참가하겠다는 약정의 표시입니다.

6. 귀하의 투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이트를 활용하여 투자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하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의 재량 내에서 투자하는 총액의 제한,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개수에 대한 제한, 기타 투자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투자완료

1. 사이트의 투자 시스템은 대출희망자가 대출신청 작성 시에 제시한 연 이자율과 신청금액을 보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투자완료는 투자금액이 신청금액의 100%가 되는 경우 달성됩니다. 해당 대출채권의 대출자 본인이나 “회사”, “여신회사”가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투자가 투자진행 상태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또는 대출채권이 철회되었을 경우에는 귀하의 투자는 취소되고, 투자에 묶여있던 자금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귀하는 이를 추가적인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완료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최종 심사 및 사실 확인 후 대출 실행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투자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자에게 대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는 투자된 금액만큼의 금액을 “여신회사”가 “여신회사”의 자체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코 투자를 완료한 투자자가 투자자 자신의 자체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투자는 결코 대출의 실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대출의 실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여신회사”에게 있고,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투자하여 투자완료된 대출채권에 대해 대출이 실행될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여신회사”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채권 상의 금액에 대해 100%가 아닌, 일부 금액의 투자금만 모집 완료 될 경우, 대출자와의 합의하에 기 투자된 금액만으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대출의 실행, 채권참가, 및 중도해지

1. 대출은 “여신회사”의 자체 자금에서 대출자의 은행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실행됩니다. 즉,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는 한 명 또는 복수의 투자자가 투자하여 투자완료될 수 있으며, 투자완료된 경우 “여신회사”는 자체 자금에서 대출자에게 투자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당 대출을 실행합니다.

2. 귀하가 투자를 완료한 경우,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한 후에 “여신회사”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해 투자를 완료한 귀하에게 귀하가 투자한 금액과 연 이자율(수익률)에 해당하는 원리금수취권리를 채권참가 방식으로 이익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원리금수취권리 매입과 원리금수취를 대행하여 원리금수취권리를 해당 투자자에게 전달하며 향후 대출자가 상환하게 될 원리금을 해당 투자자에게 분배합니다.

3. 또한, 귀하가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전체 또는 일부를 투자하였고,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을 실행했을 경우에 귀하는 귀하가 투자한 금액과 연 이자율에 해당되는 원리금수취권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투자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는 각자 투자한 금액과 연 이자율 만큼에 해당하는 원리금 수취 권리를 부여 받으며, 대출의 실행에 따른 원리금과 귀하 및 타 투자자가 참가를 통해 수취하게 되는 원리금간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은 “여신회사”의 재량 내에서 “여신회사”가 수취하거나 대출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상기와 같이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회사”를 영업자로 하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동 영업조합은 귀하가 투자한 특정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라는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한시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즉, 투자자는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명시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투자원금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투자 계약은 “회사”가 동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종료됩니다.

5.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상환완료에 대한 판단은 “회사”와 “여신회사”의 권한에 속하며, 상환완료는 대출자가 무연체 혹은 일부연체 상환을 통해 대출원리금을 전부 상환한 경우, 혹은 대출자의 120 일을 초과하는 장기 채무불이행 이후 “여신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기반하여 해당 대출자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매각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6. 한편,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참가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채권참가거래를 통해 귀하에게 원리금수취권리가 부여된 후에도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서비스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동의 없이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출자로부터 직접 수취하거나, 상환을 중용하거나, 귀하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 3 자가 보유한 원리금수취권리를 양수 또는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취급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7. 귀하는 “여신회사”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채권자로서 상환금의 수령 및 채권관리, 연체이자의 부과, 임의상환 및 강제상환, 추심 및 추심 위임 등의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 6 조 회원의 등록과 "회사"와 "여신회사"의 면책

1. 귀하는 사이트를 통한 채권참가 행위는 귀하가 “여신회사”가 보유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대한 투자 행위이며, 귀하의 자금으로 대출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투자회원은 '일반투자회원'과 '대부투자회원'의 두 가지로 분류되며, 회원의 등급에 따라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투자회원 : 일반투자회원은 사이트에 투자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최초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또한, 세금은 세법에서 정한 바대로 “여신회사”가 귀하의 이자수취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2) 대부투자회원 : 대부투자회원은 대부업의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팩스나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회사”가 승인할 경우의 투자회원등급이며,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보해야 포함합니다.

2. 귀하는 상기 대부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의 변경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제 7 조 원리금의 미보장

1.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사이트를 통해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원리금에 대한 상환이나 수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해당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만 귀하가 참가한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며, 사이트에서 귀하가 행하는 모든 투자 행위는 귀하의 책임입니다. “회사”와 “여신회사”는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사이트를 통해 투자할 경우, 해당 대출자의 연체 혹은 원리금 미상환으로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체 및 원리금의 손실은 귀하의 원금과 이자 및 귀하의 투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 8 조 투자 수수료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투자가 완료되고 채권참가가 확정된 경우, 귀하는 “회사”에게 귀하가 참가한 투자건의 금액에 대해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완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완료 수수료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의 미상환이나 손실 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투자완료 수수료는 “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면제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투자완료 수수료 이외에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출자의 대출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해당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 직전의 투자금의 잔액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제시하는 이율로 투자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변경은 “회사”의 재량 내에서 개정 가능하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 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제 9 조 원리금의 지급

1. 귀하가 투자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원리금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정해진 상환일에 상환을 했다는 전제 하에 “회사”가 해당채권에 대한 귀하의 원리금수취권리에 비례하여 귀하의 사이트 예치금계좌로 매월 대출자 상환일의 5 영업일이 지난 날에(단, 휴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입금합니다.

2. 귀하는 상환된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또는 사이트에서 다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원리금을 입금하는 계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발급한 예치금계좌이며, 투자자는 예치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치금을 언제든지 출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예치금 출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1 영업일 이내로 투자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의 실계좌로 출금 요청된 금액만큼을 입금합니다.

3. 만약 대출자가 “여신회사”에 원리금의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 혹은 추심을 통해 일부의 원리금만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참가한 투자자의 참가금액 비율에 맞게 상환된 원리금을 분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0 조 연체와 추심

1. 대출자가 정한 상환일까지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여신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지연배상금(연체료, 연체이자) 및 기타부대비용을 대출자에게 부과합니다. 아울러, 연체 발생 후 5 영업일이 경과된 후에는 “여신회사”는 대출자의 연체사실을 다수의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여신회사”는 필요할 경우에는 연체 중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를 외부 채권추심기관에 추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추심 위임에 따른 수수료 및 성과보수 등의 비용은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회수금액에서 제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심 위임된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일부 및 전부에 대한 회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또한, “회사”와 “여신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의 투자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에게 귀하의 투자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한 법적, 사회적, 물질적 배상 및 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대출의 취소

1. “회사”는 귀하의 본인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귀하는 “회사”가 본인확인을 위해 특정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보나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나아가, “회사”는 귀하의 본인확인이 실패하거나, 귀하의 사이트 사용 행위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귀하의 모든 투자를 금지하거나 투자하였거나 투자가 진행중인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이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할 권한, 그리고 귀하의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권한을 갖습니다.
3.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해당 대출 건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및 기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여신회사”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해당 대출 건에 관한 모든 투자를 무효로 할 권한을 갖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 사용의 금지 및 회원자격의 박탈

1.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투자 행위를 해선 안 됩니다. 귀하가 제공한 은행계좌정보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정보여야 합니다. “회사”는 귀하의 사이트 회원 자격을 통보 없이 박탈하고, 이후 다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2. 아울러, “회사”는 “회사”의 재량 내에서 귀하의 서비스 사용 및 사이트로의 접속을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금지할 권한을 갖습니다. 만약 귀하의 회원자격이 박탈된 시점 이전에 투자가 되어 유효한 원리금수취권리를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 또는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여전히 유효하며 귀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거한 채권참가자로서의 의무를 여전히 갖습니다.

제 13 조 특정 행위의 금지

1.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여신회사”의 일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임을 사칭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특정 대출자를 대상으로 투자 행위나 기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도의 사례나 보수를 요구해선 안 됩니다.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허가를 요구하거나 면허나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투자 행위를 사이트 서비스와 관련하여 행할 수 없습니다.
2. 귀하는 사이트 대출자를 대상으로 귀하나 귀하가 속한 법인의 대출상품에 대한 영업 행위, 대출신청을 받는 행위,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서면 허락 없이 대출자나 대출자의 지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환을 요청하거나 직접 추심을 진행하거나, 대출자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회사”의 동의 및 대출자의 동의 없이 직접 대출자에게 연락을 취해선 안 됩니다.

제 14 조 사이트 콘텐츠

1. 귀하가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여 사이트 화면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작성한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및 개인 사생활의 침해,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내용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귀하가 게시하거나 작성한 사이트 콘텐츠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포해선 안 됩니다.

1) 반사회적인 내용

2) 특정 사회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내용

3) 폭력적인 내용이나 욕설

4) 불법물이나 음란물

5)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명예 등을 침해하는 내용

6) 범죄행위와 관련된 내용

7)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웜, 트로얀 등의 데이터 및 프로그램

제 15 조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

“회사”는 본 약관 내 모든 조항을 개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단, 본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행된 “회사”와 귀하간의 모든 계약은 해당 시점에서 적용된 약관에 의거합니다. 본 약관 내 조항의 개정이 있을 경우, “회사”는 사이트 화면을 통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지합니다.

제 16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동의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 17 조 투자자 보호

개인투자회원은 각 대출채권에 대하여 최대 4,000 만원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제외)

[부칙]

1. 본 약관은 2017년 4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6년 8월 26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